

부속서 6-다 금융서비스

1. 적용범위 및 정의

- 가.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한다. 이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제6.1조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말한다.
- 나. 제6.1조에 정의된 “서비스”의 목적상, “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”란 다음을 말한다.
- 1)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
 - 2)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활동, 또는
 - 3) 그 정부의 계정으로, 보증하에 또는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활동
- 다. 제6.1조에 정의된 “서비스”의 목적상,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호의 2)목 또는 3)목에 언급된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, “서비스”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.
- 라. 제6.1조에 정의된 “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”는 이 부속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마. 제6.1조에 정의된 “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” 및 “서비스 공급자”란 제8항에 정의된 “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” 및 “금융서비스 공급자”를 각각 말한다.

2. 국내규제

- 가.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, 투자자·예금자·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,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.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경우,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장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나.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3. 인정

- 가.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규범 제정기구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. 그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, 관련 국제규범 제정기구나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.
- 나. 향후 체결될 것이거나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가호에 언급된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, 동등한 규제·감독. 그러한 규제의 이행 및 적절한 경우, 그 협정 또는 약정의 양 당사자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.
- 다.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할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에게 나호에서 언급된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.

4. 투명성

- 가.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.
- 나.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,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구체적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.
- 다. 제6.20조를 대신하여,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.
 - 1)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한다. 그리고
 - 2) 그러한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- 라.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,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.
- 마.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,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규정

의 공포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.

- 바. 각 당사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신속하게 공포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- 사.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.
- 아.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.
- 자.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.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,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- 차.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행정적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,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신청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,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.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 120일 이내, 또는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, 각 경우에 맞게,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.
- 카.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
5. 일정 정보의 취급

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.

- 가.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나.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 정보, 또는
- 다.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혹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

6. 신금융서비스

- 가. “신금융서비스”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

해서가 아닌,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이며, 이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포함한다.¹⁾

나.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²⁾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 제6.4조제2항마호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,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.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,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.

7. 분쟁해결

건전성 문제 및 그 밖의 금융상의 사안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14장 (분쟁해결)상 양 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되거나 임명된 중재패널은 분쟁 중인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는다.

8. 정의

이 부속서의 목적상,

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.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,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(보험은 제외한다)를 포함한다. 금융서비스는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.

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

가. 직접보험(공동보험을 포함한다)

- 1) 생명보험
- 2) 비생명보험

나. 재보험 및 재재보험

다.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, 그리고

1) 양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는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만 현재 존재하는 것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.

2)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, 지점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
라. 상담·계리·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

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(보험은 제외한다)

마.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

바. 소비자신용·담보대출·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

사. 금융리스

아. 신용·선불·직불카드·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

자. 보증 및 약정

차. 거래소 및 장외시장,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, 다음을 자기계정 또는 고객계정으로 거래하는 것

1) 화폐시장 상품(수표·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한다)

2) 외환

3)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

4) 스왑·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

5) 양도성 증권, 또는

6)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

카.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(공모 또는 사모)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

타. 자금중개업

파.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·모든 유형의 집합투자관리·연금기금관리·보관·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

하. 증권·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

거.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, 그리고

너. 신용조회와 분석,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·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,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활동에 대한 자문·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

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희망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나, “금융서비스 공급자”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상업적 조건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하는,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기능이나 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당사국의 정부,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,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, 또는
- 나.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할 때,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, 그리고

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, 결제기관,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·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.